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2152 판결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모욕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2152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4:33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라제XG 승용차의 진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위승용차 조수석 창문에 부착된 썬바이져를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썬바이져를 깨트린 뒤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앉아 있는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썬바이져 파편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4:4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38경 수원시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뒤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2016. 4. 25. 06:5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수사 작성해서 검사한테 넘길거지?, 야너 검찰에게 넘길거지?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H를 향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07:17경 위 H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4. 모욕

피고인은 2016. 4. 25. 06:38경부터 08:54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누나도친구 팔아서 돈버는 년이구만, 저 경찰있잖아 그 새끼랑 한통속이야, 창녀가 되는겨, 니가 1억 이상 받으면 내 좆에 장을 지진다. 씨 발년아 씹을 팔고 살지 창녀보다 못한 년, 니 친구는 개걸레가 돼서 살든가 말든가, 나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팔아먹게, 왜 양심을 팔아 내가 씨발 2억 줄게 창녀보다 못한 년, 애미애비가 없으니까 니 친구 팔아먹고 살지, 에라이 개씨발 너는 왜 경찰한 겨?"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욕설을 함으로써, 3명의 경찰관 및 2명의 일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D의 진술서
-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 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썬바이져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썬바이져 파편으로 피해자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욕 등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러한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수회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F, D과는 합의되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 판사 전대규